

부속서 II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라. 제 8.8 조(이행요건)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그리고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3. 제 8.9 조제 2 항 및 제 9.6 조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고려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 9.2 조)와 현지주재(제 9.5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반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투자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제 4 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제 5 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2)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2. 제 8.18 조 및 제 8.19 조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 8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 1 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 8 장(투자) 제 2 절이 준용되며, 제 8 장(투자) 제 1 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 8 장(투자) 제 2 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 8 장(투자) 제 1 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 1 항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 1 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 10 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이행된다.

제 10.9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 10.2 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분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

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 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 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 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 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 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 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 16 조제 2 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 9.6 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 9.5 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라. 철도 운송

10.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 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42 번째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 8.8 조제 1 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13.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43 번째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14.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p data-bbox="574 519 989 557">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 data-bbox="574 602 1414 685">한국은 쌀, 인삼, 그리고 홍삼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62 730 925 768">가. 중개서비스 <li data-bbox="662 813 1332 851">나.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서비스, 그리고 <li data-bbox="662 896 925 934">다. 소매서비스

15.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수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내륙수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쌀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 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속하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대하여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이 배타적 권리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도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그러한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3.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p data-bbox="571 560 989 604">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 data-bbox="571 640 1414 763">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4.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10 장(금융 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 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5.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제 19 장(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이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20 번째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6.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7.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9.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0.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2.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3.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4.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5. 분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6.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무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캐나다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 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 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 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무회사가 한국법무회사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법무회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 내에 있는 법무회사를 말한다.

37.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 1)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캐나다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 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1 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공인회계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38.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나. 외국 세무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1)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캐나다 세무법인이 캐나다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 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한국 세무사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세무사 1인은 한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 2 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 세무사”란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39.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제 9.1 조(적용범위)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 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 나. 제 10 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 서 한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41.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나.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연안 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되며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한국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한 선박
- 2)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3)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그리고
- 4)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부록 II-가
GATS 제 16 조에 적용되는 한국 분야

다음 분야/하위분야의 경우,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p> <p>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다.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 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p> <p>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나. 여행 대행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 대하여 “약속 안 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 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